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77
----------	-----

2024. 6. 24.(월)  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박진희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4년 5월 29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5월 31일

라. 상정일자 : 2024년 6월 11일

-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
## 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진희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내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,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시 보도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·시행계획 수립 시 보도 및 방호울타리 설치 및 관리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4조 및 제5조)
- 어린이 통학로 개선 실태조사 시 보도 및 방호울타리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실태를 포함하도록 함(안 제6조)
-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·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결과를 충청북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(안 제6조의2)

## 3. 검토보고 요지 (김홍식 수석전문위원)

- 안 제4조는 3의2호를 신설하여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시 어린이 통학로 내 보도와 방호울타리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면서, 특히 보도의 경우 국토교통부 예규인 「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」에 따른 보도 유효폭 확보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고, 제4항을 신설하여 계획 수립 시 충청북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,
  - 최근 충북 초등학교 인접도로에 보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60.9%에 달한다는 언론보도[뉴스1, “충북 초등학교 인접 도로 보도 설치율 전국 꼴지서 세번째” (23.10.20.)]가 있었던 반면, 충북도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고,
  - 방호울타리는 자동차의 보도 진입을 방지하여 보행자를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고, 보행자가 길 밖으로 추락하거나 횡단을 금지하는 시설로,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를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또한 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를 직접 이용 하는 어린이, 행정안전부 등 4개부 공동부령인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초등학교등의 관계자, 그리고 충청북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 하다고 판단됨.
- 안 제5조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 시행계획에 보도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,
  - 안 제4조의 검토내용과 같은 근거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6조는 실태조사 시 어린이 통학로 내 보도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여부, 보도 및 방호울타리가 ‘완비’ 되지 않은 때에는 설치 비율을 개소별로 파악하려는 것으로,
  - 실태조사 시 설치 또는 미설치 여부만 파악할 경우, 어린이 보호 구역 및 통학로 내 보도·방호울타리가 일부만 설치된 경우에도 ‘설치’된 파악하는 관리상 허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6조의2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, 시행계획 및 실태 조사를 수립 또는 실시한 경우 그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충청 북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,
  -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충청 북도의회 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그 밖의 조문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조례안 예고('24. 5. 31 ~ 6. 7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

#### 4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,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시 보도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, 기본계획 수립 시 충청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, 동 기본계획,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수립 또는 종료한 경우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위 검토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어린이 통학로 개선 실태조사 시 충청북도 내 시·군의 협조가 필수적이고,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에도 충청북도 및 시·군 도로관리부서, 충청북도교육청, 충청북도경찰청 및 경찰서장, 유치원·초등학교·어린이집 등 시설의 관계자를 비롯하여 관련 민간 단체,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집행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6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7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8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등

##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어린이 통학로 내 보도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및 관리. 이 경우 「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」에 따른 보도 유효폭 확보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, 초등학교등의 관계자 및 충청북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,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 ) 을 “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 ) ” 으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어린이 통학로 내 보도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및 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어린이 통학로 내 보도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여부, 보도 및 방호울타리가 완비되지 않은 때에는 그 설치 비율에 대한 개소별 실태를 포함하여야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기본계획 등의 제출)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,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, 제6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계획 수립 완료한 날 또는 실태조사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 <p>4. ~ 9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 <p>④ (생략)</p> <p>제5조(어린이 통학로 개선 시행계획)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통학로 개선 <u>시행계획</u>(이하“<u>시행계획</u>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<u>&lt;후단</u></p>	<p>제4조(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의2. 어린이 통학로 내 보도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및 관리.</u> <u>이 경우 「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」에 따른 보도 유효폭 확보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</p> <p>4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, 초등학교등의 관계자 및 충청북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,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 <p>제5조(어린이 통학로 개선 시행계획) ① ----- ----- <u>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-----</u> -----<u>. 이 경</u></p>



## 관계법령

### □ 도로교통법

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·해제 및 관리)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.

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
2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
3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
4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,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·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
5.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

② ~ ⑤ (생략)

### □ 도로법

제50조(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 등) 도로의 구조 및 시설, 도로의 안전점검, 보수 및 유지·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,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.

## □ 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

제16조(보도) 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. 이 경우 보도는 연석(緣石)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차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
2. 횡단보도에 접한 구간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, 자전거도로에 접한 구간은 자전거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

③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,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·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.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④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,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폭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.